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192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노정운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종민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 주식회사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114,806,851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20. 3. 2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72,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0. 3. 25.부터 2021. 3.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위 신용보증기간은 2021.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G의 대표이사인 D은 G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G 및 D은, H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 대위변제 · 대지급 · 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G와 D이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에 보증금액 72,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 무렵 G는 I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G는 2021. 4. 9.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021. 4. 28.에는 G에 대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D은 2021. 2. 26.부터 J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G는 I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연체하였고, 이에 I은행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21. 8. 26. I은행에 72,535,817원(= 보증원금 72,000,000원 + 이자 535,817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G 및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전2534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12. G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80,134,668원 및 그 중 277,001,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D에 대하여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돈 중 75,016,991원 및 그 중 72,535,8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21. 11. 2. 각 확정되었다.

바. 한편, D은 2020. 12. 3.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로부터 9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은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와, 근저당권자를 피고 A로, 채무자를 D으로, 채권최고액을 120,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0. 12. 3. 접수 제12530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2021.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1.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아. D은 2021. 3. 5.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채무자를 D으로, 채권최고액을 1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3. 5. 접수 제1653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A 및 L 주식회사의 각 임의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F)에서 실시된 배당에서 2022. 8. 23. 피고 A의 양수인인

피고 B에 114,806,851원을, 피고 C에게 91,885,84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차.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의 각 체결 당시 D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876,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72,000,000원의 사전구상금채무, 469,000,000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의 M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56,000,000원의 N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90,000,000원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252,000,000원의 I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36,000,000원의 J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93,000,000원의 피고 A에 대한 대출채무 등 총 1,168,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2021. 4. 28.에 G에 대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2021. 4.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G에 대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D과 피고 A 사이에 사해행위인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날인 2020. 12. 3. 이후에 위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2020. 3. 25.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G는 2021. 4. 9.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2020. 12. 3.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D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1. 4. 28.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D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는바, 원고의 D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 A에 채권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 및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A 및 전득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및 피고 B가 선의의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제1항 기재 인정 사실 및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A는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회사로서 D과 2020. 12. 3. 대부금 93,000,000원을 이자율 연 16.9%, 연체이자율 연 19.9%, 변제기 2021. 12. 1.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 93,000,000원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87,462,277원을 D의 I은행계좌로 지급한 점, ② 이와 같이 피고 A는 대부회사로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보일 뿐, D과 사이에 특별한 연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는 D과의 대부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는 전혀 없었던 점, ④ 피고 A는 D과의 대부계약 체결 당시 D 및 D이 대표로 있는 G에 대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및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서류상에 세금 체납내역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가 D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위

93,000,000원의 대부금채권을 양수받은 회사로서, 피고 B 역시 위 채권양수 당시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 및 피고 B는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2021. 4. 28.에 G에 대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2021. 4.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G에 대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D과 피고 C 사이에 사해행위인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날인 2021. 3. 5. 이후에 위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2020. 3. 25.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G는 2021. 4. 9.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2021 3. 5.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D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1. 4. 28.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D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 C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선의의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을다 제1,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피고 C는 당초 이 사건 2022. 11. 24.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피고 C가 2021. 3. 5.까지 D이 추진하던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에 26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그때까지 73,500,000원을 회수하였는데, 잔존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그때까지의 입출금을 고려하여 계약서상 채권최고액을 140,00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 C는 이 사건 2023. 1. 2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C는 D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가 진행하는 엔터테인먼트사업에 투자하였는데{O가 유한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 투자금액은 2021. 3. 5.까지 260,000,000원(= O 160,000,000원 + P 100,000,000원)이고, 그때까지 반환받은 금액이 73,500,000원이므로, 미반환금은 186,500,000원인데, 그 중 일부는 정산방법에 대해 협의되지 않아 우선 일부금 14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2023. 3. 9.자 준비서면에서, 2021. 3. 4.까지 피고 C가 O에 투입한 돈은 100,000,000원이고, P에 투입한 돈은 100,000,000원으로 총 200,000,000원이었고, 그때까지 O 계좌에서 40,000,000원, P

계좌에서 30,500,000원 합계 70,500,000원을 돌려받아 미반환금이 129,500,000원(= 200,000,000원 - 70,500,000원)이었는데, P와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100,000,000원은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여 남은 채권액 29,500,000원(= 129,500,000원 - 100,000,000원)에서 O에서 추가 투자를 요청한 100,000,000원을 합한 129,500,000원에 이자를 더하여 14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C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산정 경위 및 그 피담보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 C가 실제로 O에 투자한 것이 맞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으로 P 및 O에 대한 투자채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익배분이나 정산에 관한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P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약정서(을다 제6호증의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다 제6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피고 C는 P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투자약정서에는 투자액이 100,000,600원(투자금을 100원 단위까지 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으로 기재되어 있다(투자금지급내역(을다 제1호증)의 2020. 6. 26.자 50,000,000원 및 50,000,600원(이체 수수료 600원이 더해진 금액으로 보인다)에 맞추기 위해 투자약정서상 투자액을 100,000,6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약정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 C는 P에 2020. 6. 24. 50,000,000원, 2020. 6. 26. 5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2020. 8. 4.부터 2022. 10. 11.까지 합계 84,500,000원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C는 P에 대한 100,000,000원의 투자가 그 금액 상당의 P 주식을 양수함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84,500,000원의 출금과 관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주식이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D이 O의 대표이사 Q와 O의 운영을 동업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D이 O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등기이사는 아니었다. D이 O의 투자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할 만큼 O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별지

목 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로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112.0216㎡

끝.

